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847
----------	-----

제출년월일 : 1999. 12.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사유

- 시민공원내에 시예산을 들여 조성하기로 결정한 골프연습장을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예상수입액의 여건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 시자체건립이 아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 골프연습장 건립방법을 시자체 건립에서 공개 공모를 통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전환하여 건립코자 합니다.
-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취득재산 (1건)

1) 시민공원내 골프연습장 민자유치사업 건립

- 원곡동 615번지 시민공원내에 골프의 대중화와 시민의 여가선용 장소 제공 및 경영수익 증대로 지방재정을 확충코자 자체 건립키로 한 골프연습장을 예산절감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립코자 함

□ 사업계획

○ 위 치 : 안산시 원곡동 615번지 일원 (시민공원)

○ 면 적 : 11,560m² (3,497평)

○ 시설규모

- 건축면적 : 1,032m² (연면적 : 3,096m²)
- 층 수 : 지상 3층 (102타석 규모)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 옥외필드 : 1식
- 추정공사비 : 3,535백만원 (민자유치)

□ 추진일정

- 시정조정위원회 변경심의 : '99. 12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 : '99. 12월
- 대상사업 기본계획 고시(공개모집) : 2000. 1 ~ 2월
- 사업계획 검토 및 대상자 선정 : 2000. 3 ~ 5월
-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원실시계획인가 : 2000. 7월
- 공사시행 : 2000. 7 ~ 2001. 3월

* 사업시행자 선정시기에 따라 추진일정이 변경될수 있음

□ 민자유치 사업계획

- 민자유치 사업시행자는 공고를 통한 공개 공모로 시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업자로 선정
- 영구시설물인 건물(타석, 사무실, 락카 등)과 부대시설(매점, 주차장 등)은 기부체납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물의 무상사용 및 수익을 인정 인정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추진
- 기계, 페어웨어 등 비영구시설물의 무상기부 및 사용조건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모집공고시 조건으로 명시 (협약서 체결)
-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체납 재산가액(감정평가액) 범위안에서 운영수익 등을 고려하여 무상사용기간을 최소화 산정 추진

□ 주관과 의견 (공원녹지과)

-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제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민간에게 사업을 위임하는 추세에서 시재정여건을 감안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예상수입의 여건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 시자체건립이 아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 검토

- 도시공원법 제4조(도시계획의 입안결정) : 공원조성계획 결정('99. 5. 27)
-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2조(공원시설의 종류)

□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붙임

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7-1)

나. '99년도 취득재산 목록 (7-2)

□ 관계법령 발췌내용 :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0년도 관리계획변경총괄표 (7-1)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3,096	3,535,000				1	3,096	3,535,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3,096	3,535,000				1	3,096	3,535,000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멸 실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00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7-2)

(단위 : m³, 천원)

□ 관계법령 발췌내용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②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건당 1천제곱미터이상)

○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의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